

# 어업(한정)면허 유효기간 연장 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어업면허(한정) 연장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어업면허 처분내역

| 면허번호           | 면적<br>(ha) | 어업방법 | 양식물<br>종 류                     | 어 업 권 자                          |                        | 어장의<br>위 치      | 면허기간                          | 비 고                    |
|----------------|------------|------|--------------------------------|----------------------------------|------------------------|-----------------|-------------------------------|------------------------|
|                |            |      |                                | 주 소                              | 성 명                    |                 |                               |                        |
| 서구 마을어업<br>제1호 | 15         | 바닥식  | 바지락,<br>가무락,<br>맛,<br>낙지,<br>등 | 인천광역시<br>연수구<br>새말로 141<br>(연수동) | 인천<br>수산업<br>협동<br>조합장 | 서구<br>세어도<br>지선 | 2024.04.10<br>~<br>2027.04.09 | 한정<br>면허<br>어업<br>(연장) |
| 서구 마을어업<br>제2호 | 15         |      |                                |                                  |                        |                 |                               |                        |
| 서구 마을어업<br>제3호 | 10         |      |                                |                                  |                        |                 |                               |                        |

## 2.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포획·채취방법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 나. 어업권자는 당해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 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어업권은 이전, 분할, 변경이 불가하며, 어업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라. 한국수자원공사의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및 경인아라뱃길사업,

신공항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 및 건설 사업(주변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피해포함), 향후 공항 건설사업 등 공익 사업으로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보상 및 배상청구를 금하며, 기관의 건설사업 등으로 어장폐쇄를 요구하는 경우 조건 없이 어장 자진폐쇄(철거)하여야 합니다.

마.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종패살포, 어장 내 신규시설 설치 등 비행기 운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천국제공항운영(항공기 운항 포함) 및 시설관리에 따른 어떠한 피해에도 보상 또는 배상을 금합니다.

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 시 어업권 보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한 사안임으로 보상협의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경기본부)에 조회하여야 합니다.

사. 어업권자는 당해 어장에서의 불법어업 행위 방치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현상관리에 지장을 금합니다.

아. 어장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정화를 실시하여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식년제의 도입과 같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만일, 오염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 즉시 적법하게 조치(처리 등)하여야 합니다.

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 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지대책을 수립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물에 대해 피해 및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시설관리에 따른 어떠한 피해에도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항만건설사업 및 '24년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경인항 유지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및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장폐쇄가 필요하여 어장폐쇄를 요구하는 경우 조건없이 면허 취소 및 즉시 자진 폐쇄(철거)하여야 합니다.

카.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및 공항운영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일체의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 등을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항운영 및 새로운 공사 추진, 공익사업 목적 상 어업취소 또는 어업의 제한이 필요하여 어장을 폐쇄하거나 어업중단 등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의 없이 처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참고).

※ 상기조건을 위반 시 어업면허를 취소함.

## **【별지】 해역이용협의(기간연장) 의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 해역이용협의 총괄의견 (조건부 동의)**

- 본 사업지역은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에 포함됨.
- 사업기간 동안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양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해역이용행위 관련 이해당사자들(행정기관, 어업인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사전에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여야 하며, 민원 및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
- 해역이용협약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해역이용협의 세부협의 의견

- 본 사업은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포획·채취방법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 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지대책을 수립 후 이행하여야 함.
  - － 본 사업이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 내 위치하므로 해당 어장으로 인해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영장 및 어장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의 적정 조치하여야 함. 만일, 오염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 즉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사업지역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항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본 해역이용행위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항만건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민원제기, 피해 보상 요구, 소송 제기 등을 하지 않아야 함

## □ 행정사항

- － 「해양환경관리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일로부터 5년 동안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보존하여야 하고, 본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
- －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별첨 조업구역도 각 1부.